

2026년도 제3회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출국대기실경비업무) 채용시험 면접전형 합격자명단 및 등록일정 공고

2026년도 제3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면접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 면접합격자 : 총 2명

○ 출국대기실경비업무-공무직(1명)

260614 이○지

○ 출국대기실경비업무-기간제(1명)

260703 조○연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록 및 제출서류

가. 등록 기간 : 2026. 9. 21.(월) ~ 9. 23.(수) 18:00까지 방문 등록(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우편,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등록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나. 등록 장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인사팀)

○ 주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2터미널대로 444, 인천국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307호

○ 전화번호 : 032-740-7101

다. 제출 서류

○ 신원진술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첨부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 양식)
- 행정정보 공공이용 사전동의서 1부(첨부 양식)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1부(주민센터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주민센터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센터 발행)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부(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발행)
- 채용신체검사서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각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 병원 상황으로 인해 등록기간 내 검사결과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보완 제출 가능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첨부 양식)
- 사진[반명함판(3×4cm)]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통장 사본 1매(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

라. 유의 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면접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 등 채용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채용)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완료 이후, 개별 연락 및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10. 6. 이후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032-740-7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업체 및 정당·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별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성명				년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사회단체 경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해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은 2부 모두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 ④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지, ☐ 실거주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신원조사는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참고로 관련 기관에서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작성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직장명 및 소재지 :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 연락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합니다.
- ☐ 학력
 - 본인의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학교명 :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
 - 학위 : 재학 중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 : 학교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동·면단위까지 적습니다.)

☐ 경력

- 본인의 최근 경력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시민단체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외거주사실

여행 목적이 아닌 해외거주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 병역관계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 군별, 병과, 최종계급, 복무기간 등을 기재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 미필사유 :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연령미달, 입영연기중, 여자 등을 기재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본인의 자녀를 기재합니다.

- 기재 순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순으로 기재합니다.

☐ 기타 작성 시 주의사항

신원진술서 상의 하단의 ‘서명’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3곳)’의 서명은 반드시 모두 같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조회 안내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귀하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출입·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조회 목적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제공받는 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보유·이용 기간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제공·조회 항목 (해당기관)	제공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조회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 병적자료(병무청) ▪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6년도 제1회 공무원직 근로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유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